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921번
- 제 안 자 : 김용석 의원 외 9명
- 제 안 일 : 2020년 10월 5일
- 회 부 일 : 2020년 10월 00일

2. 제안이유

-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전공대학 학생들은 현 조례상 장학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서울시 장학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공대학 학생들이 장학금 지급 및 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서울시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및 선정대상에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전공대학 학생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0.10.29. ~ 11.5.)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전공대학 학생들은 현 조례상 장학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전공대학의 재학생이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 및 선정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가. (현행과 같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현행과 같음)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u>학교</u>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u>학교와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u>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 전공대학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이며, 「평생교육법」은 이러한 학교를 ‘전공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장학재단은 서울시 소재 전공대학은 3개교(정화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재학생 수는 총 11,124명(2019년 기준)으로 이중 소득구간* 4구간 이하 인원은 3,523명이며, 약 30%가 저소득 학생으로, 장학금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음.

※ 소득구간

·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과 재산 조사로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값.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각종 사회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복지업무 정보시스템

〈 ‘소득구간’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단위:만원)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학기 최대지원액	260	260	260	260	195	184	184	60	33
연간 최대지원액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

출처 : 한국장학재단

〈 2020년 전공대학 현황 〉

분류	백석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총장 윤미란)	백산학원(총장 강일모)	정화예술대학(총장 허영무)
소재지	서초구 방배동	강남구 논현동	중구 퇴계로
전공과목	음악학부 공연예술학부 디자인미술학부 영상학부 외식산업학부 항공서비스학부 언어문화학부 경영행정학부 사회복지학부	스튜디오작곡과 실용음악과 뮤지컬과 연기예술과 공연기획과 무대예술과 뷰티아트과	미용예술학부 영상미디어학부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학부 항공호텔관광학부 호텔조리 디저트학부 사회복지학부

출처 : 서울장학재단 제출자료

-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서울장학재단의 설립목적 그리고 서울장학재단에서 제출한 전공대학의 재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장학사업 대상의 범위를 전공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장학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비교해 보면,

-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① 전공대학,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③ 외국 대학(대학원포함)의 학생은 서울장학재단의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서울장학재단의 장학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한국장학재단의 장학대상에 포함된 학교

① 전공대학: 정화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 본 개정안의 대상.

②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영남사이버대학교(경북경산), 세계사이버대학(경기광주)

③ 외국의 대학(대학원 포함)

- 전공대학은 본 개정안의 대상이며, 서울시 소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공대학과 외국 대학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장학대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외국 대학(대학원 포함)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수인재 발굴과 양성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장학대상의 발굴과 효과적 전달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